

- '24년 서울 유망 뷰티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팝업스토어 및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서울 소재 유망 뷰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두바이 팝업스토어 및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의 신규 시장진출 및 판로확대를 희망하는 관련 분야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5. 23.

서울특별시

□ 사업개요

- 사업명 : '24년 서울 유망 중소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두바이 팝업스토어 및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분야)
- 사업기간 : 2024. 6 ~ 11월
- 지원목적 :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판로개척·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 인·허가 취득 지원, 두바이 B2C 판매채널 입점 지원 및 현지 팝업스토어 홍보·판매 기회 제공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지원대상 : 두바이 수출 유망 상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①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입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제공
 - 아랍에미리트 유명 뷰티 판매채널(온/오프라인) 바이어와의 상담회 운영 및 입점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제공

②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뷰티 팝업스토어 운영

- 현지 팝업스토어 행사장에서 3~5일간 제품 판매 및 홍보 기회 제공
- ※ 팝업스토어 기간은 '24. 9월 초 예정이며 행사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중동 지역 진출 관련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 중동 지역의 뷰티 시장 동향 및 트렌드 파악 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팝업스토어와 연계한 브랜드별 체험행사와 마케팅 이벤트 지원
- 중동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SNS 홍보마케팅 진행

☐ 기업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 5. 23.(목) ~ 6. 12.(수) 18:00까지
- 모집규모 : 총 30개 사 내외
- 모집분야 : 일반화장품, 할랄·비건 화장품, 이너뷰티, 뷰티테크 분야
- 모집대상 : 서울 소재 화장품 및 뷰티테크 중소기업 ※ [붙임 1] 참조
 - 지 역 : 서울특별시 소재(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 기준)
 - 업 종 : 「화장품법」 제2조의 2(영업의종류)에 따른 화장품업 또는 통신기계·기구·응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 기업
 - 규 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 우대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초기 창업기업(5년 이내) 등 우대
- 향후일정 : '24.6월 중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 선정기업 별도 안내예정

☐ 세부 지원사항 및 참고사항

- (공통) 팝업스토어 상품별 전시 및 판매공간, 비즈니스 상담 공간 제공
- (공통) 팝업스토어 물류 운송 지원 ※ 지원물량 이외 추가물량은 참가사 개별 부담
- (공통) SBA TRADE ON 연계 수출 자문상담 및 바이어 매칭 지원
- (공통) 현지 유통사 관계자 및 전문 통역의 섭외 지원 등
- 그밖에 기업별 출장인력 여행경비, 체재비, 통역비 등 기타비용은 기업 개별 부담

□ 참가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5. 23.(목) ~ 6. 12.(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구글폼 양식 제출)

① 신청서류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 -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https://forms.gle/JgqwK2Wj2auPDYLM>

◆ 제출서류 : zip 파일로 압축, 파일명은 “신청기업명_지원분야”(온/오프라인 입점
중 선호분야 기재, 둘 다 가능)

번호	목 록	제출양식 / 참고사항
1	참가 신청서, 서약서 (필수)	※ 서식 1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서식 2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3	정량평가 및 가산점 자가진단표 (필수)	※ 서식 3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4	사업자등록증 (필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중소기업인증 확인서 (필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소기업부 발급분
6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필증 (필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분
7	기업 카탈로그 및 제품 소개자료 (필수)	국문(필수), 영문 및 기타 언어(선택)
8	해외규격인증서 (보유시 필수)	- 해외 수출 관련 인증 등 해외규격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등
9	최근 3년('21~'23년) 수출 실적 증빙자료 (보유시 필수)	- 수출신고필증,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10	가산점 증빙서류 (보유시 필수)	- 유망 중소기업(하이서울 인증기업) - 초기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 -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장애인 기 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하도급거래 모 범기업 등 해당 증빙 제출 必) -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친환경 재료 사용 및 비동물실험과 관련한 비건 인증 등 해 당 증빙 제출 必)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미비 시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심사 및 선발계획

- 정량평가(30점) : 제출서류 기반, 신청조건/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수출준비도 절대평가
- 정성평가(70점) :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이 상대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뷰티산업, 화장품 유통, 마케팅 분야 관련 전문가 5인
-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항목별 평가 기준(점수 배점)은 최저 수치와 최고 수치를 제외하고 평균화 예정
- 가산점(최대 5점) : 총점 100점 내에서 최대 5점까지 부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정량적 평가 (30점)			정성적 평가 (7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수출실적	• '21~'23년(최근 3년) 평균 수출액 - 500만불 이상 : 10점 - 100만불~500만불 미만 : 9점 - 10만불~100만불 미만 : 8점 - 10만불 미만 : 7점	10	진출시장 적합성 및 경쟁력 (진출시장 적합성, 대상시장 마케팅 경험, 시장진출 가능성 등)	20
참여이력	• 국외 뷰티 전시회 참여 이력 - 3회 이상 : 10점 - 2회 이상 : 9점 - 1회 이상 : 8점 - 1회 미만 : 7점	10	상품기술력, 경쟁사 대비 제품(기술)의 차별성	20
수출준비/ 역량	• 지식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등 - 3개 이상 보유시 : 10점 - 2개 : 9점 - 1개 : 8점 - 1개 미만 : 7점	10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 현장운영 능력과 역량	20
			참가 후 성과 및 발전가능성	10
가산점 (최대 5점)	유망 중소기업(하이서울 인증기업) / 초기(5년 이내)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			0.5~1.0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친환경 재료 사용, 비동물실험, 사회공헌활동 등)			0.5~1.5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0.5~2.0
	참여기업의 홍보 담당 출장 인원 지원			0.5

- ※ 수출실적 : 최근 3년('21~'23년) 중 수출 실적이 없는 연도는 평균 계산에서 제외하고 평가
예시) '21년 100만불, '23년 200만불인 경우 (100+200)/2로 평균 계산하여 150 인정
- ※ 수출준비/역량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 등), 해외규격인증(ISO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Good Mark 등), 우수기술 인증(NT·KT·EM·싱글PPM·GQ 등), 국내외 품질인증(서비스 포함)

※ **가산점**은 총점 100점 내에서 **최대 5점까지 부여**

평가요소	주관기관	가산점 항목	평점	인정 범위
유망 중소기업/ 창업기업	서울경제진흥원	유망 중소기업 (하이서울 인증기업)	0.5	중복인정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5년 이내 창업기업	0.5	
사회적 가치실현기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친환경·천연 재료 사용 여부	0.5	최대 1.5점 이내 중복인정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비동물실험 또는 비건 제품 개발 여부	0.5	
	주관기관	사회공헌활동 이력(수익기부, 생필품기부 등)	0.5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 기업	1	최대 2점 이내 중복인정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1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1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1	
	지방자치단체	예비 사회적 기업	1	
	정부부처	사회적협동조합	1	
	지방자치단체	자활기업	1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0.8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0.8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0.5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국세청	모범납세자	0.5	
출장인력	참여기업	팝업스토어 제품 홍보 및 판매 인력 지원	0.5	

☐ 유의사항

- 참가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거나 참가규정 위반 시, 추후 서울시의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제출기일 경과시 참가신청 포기로 간주함
- 선정이 취소되거나 기업에서 불참하는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참가기업 선발 ※ 결원 발생 시, 예비 기업 중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서울시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해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판매계약, 유통사와 참가기업 간 계약 등 제품의 유통 및 현지 팝업스토어 운영에 대해 경영적·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함.

- 제품 성분(INGREDIENT) 중 진출시장 기준 수입 불가한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사전 바이어 매칭 등 관련하여 홍보용 제품 샘플(제품당 30여 개) 제공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 본 지원사업의 추진일정 및 지원사항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주)슈크란코리아 김승 대표 070-8095-9930, sck@shukrankorea.com

붙임 1 : 모집기업 신청자격 세부조건 1부.

□ 모집대상 : 서울소재 화장품·뷰티테크 중소기업

○ 지 역 : 서울특별시 소재(사업자등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업 종

① 「화장품법」 제2조의2 (영업의 종류)에 따른 **화장품업**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1. 화장품제조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다.化粧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② 통신기계기구·응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 기업***

* 뷰티테크(Beauty-tech)란 미용(Beauty)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로, AI, AR, VR, IoT, 빅데이터, 3D프린팅, 얼굴인식 기술, 로봇, 딥러닝, 유전자검사 등 기술을 포함하며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의 분야에 적용

※뷰티테크 기업 예시

-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바탕으로 AI분석 기반 맞춤형 네일 코스메틱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업체
- 유선통신장비제조업을 바탕으로 맞춤형화장품 구독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용 IoT 피부진단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바탕으로 피부촬영을 위한 이동형 촬영장치를 생산하는 업체
- 통신기계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컬러 및 패턴이 가능한 1초 타투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업체
- 기타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기업

※ 산업영역 규정 기준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분류)에 따름

○ 규 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